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철도사업자가 교통약자를 위한 좌석 예약체계를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개정(법률 제20756호, 2025. 1. 31. 공포, 2026. 2. 1. 시행)됨에 따라, 교통약자의 철도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좌석 예약체계를 마련해야 하는 철도사업자를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공사 및 「철도사업법」에 따라 철도사업 면허를 받은 자 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법인·단체 또는 기관으로 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 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 · 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8까지를 각각 제14조의4부터 제14조의9까지로 하고, 제1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3(철도의 이용 보장 등) 법 제1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사업자”란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공사 및 「철도사업법」 제5조에 따라 철도사업 면허를 받은 자 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법인·단체 또는 기관을 의미한다.

부 칙

이 영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설></u>	<u>제14조의3(철도의 이용 보장 등)</u> <u>법 제1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사업자”란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공사 및 「철도사업법」 제5조에 따라 철도사업 면허를 받은 자 중 「공공기관</u> <u>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법인·단체 또는 기관을 의미한다.</u>
<u>제14조의3 ~ 제14조의8 (생략)</u>	<u>제14조의4 ~ 제14조의9 (현행 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8까지와</u> <u>같음)</u>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	
연 락 처	(044) 201 - 4772